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24년 6월 26일
3. 정정사유 :
  - 클래스(A2e) 추가
 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)
 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(공통)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펀드코드	<신설>	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 (EC806)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<요약정보>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가가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가가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투자비용	<신설> (주2) 종류 A형, 종류 A2형,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목표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가입 클래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	<u>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</u> (주2) 종류 A형, 종류 A2형,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또한,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, <u>종류 A2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</u> 다만, 해당 시점 등은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목표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가입 클래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투자자유의사항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

	<p>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&lt;요약정보&gt; 주요투자위험</p>	<p>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</p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 업데이트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<p>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&lt;신설&gt;</p>	<p>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- 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: <u>온라인(On-Line)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(선취판매수수료 부과)</u></p>
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,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,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</u>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,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,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아니하며</u>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</p>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	<p>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&lt;신설&gt;</p>	<p>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: <u>온라인(On-Line)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(선취판매수수료 부과)</u>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&lt;신설&gt; 주1)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, Class A2, Class Ae 및 Class AG 수익증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 주1)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, Class A2, Class Ae, <u>Class A2e</u> 및 Class</p>

	<p>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상기의 판매수수료를 이내 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,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&lt;신설&gt;</p> <p>&lt;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주3) [종류 Ae 와 종류 Ce]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·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[2년 11개월]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p>주4) [종류 A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[납입금액의 0.5%], [종류 A2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[납입금액의 1.0%], [종류 Ae, 종류AG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[납입금액의 0.25%] 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.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	<p>AG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상기의 판매수수료를 이내 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,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</u></p> <p>&lt;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&gt;</p> <p><u>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</u></p> <p>주3) [종류 Ae 와 종류 Ce]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·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[2년 11개월]이 되는 시점이며, <u>[종류 A2e 와 종류 Ce]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·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[2년 10개월]이 되는 시점이나 해당 시점 등은</u>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p>주4) [종류 A, <u>종류A2e</u>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[납입금액의 0.5%], [종류 A2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[납입금액의 1.0%], [종류 Ae, 종류AG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[납입금액의 0.25%] 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.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분리과세한도:  <u>연 1,200만원</u>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 <u>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]</u></p>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분리과세한도:  <u>연 1,500만원</u>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 <u>연 1,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]</u></p>

# 변경대비표

## 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24년 6월 26일
3. 정정사유 :
  - 클래스(A2e) 추가
 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(공통)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펀드코드	<신설>	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 (EC806)
<요약정보>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투자비용	<신설> (주2) 종류 A형, 종류A2형,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목표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가입 클래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	수수료선취-온라인(A2e) (주2) 종류 A형, 종류A2형,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또한,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, <u>종류 A2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</u> 다만, 해당 시점 등은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목표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가입 클래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투자자유 의사항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주요투자위험	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	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

<p>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</p>
--	--